

서울특별시 금천구 스포츠클럽 지원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

[정재동 의원 발의]

의안번호	2274
------	------

발의일자 : 2022. 11. 10.

발 의 자 : 정재동 의원(1명)

찬 성 자 : 이인식 의원

1. 제안이유

「스포츠클럽법」(시행 2022. 6. 16. / 제정 2021. 6. 15.)이 시행됨에 따라 스포츠클럽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여 스포츠클럽의 지원과 진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금천구 체육활동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주민의 건강과 체력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 및 제2조).
- 나. 구청장의 책무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 다. 시행계획 수립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 라. 스포츠클럽 등록 및 취소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 마. 스포츠클럽 지원 및 신청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및 제8조).
- 바. 스포츠클럽 회계관리, 보고·검사, 보조금 환수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에서 제11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스포츠클럽법」 제2조, 제3조, 제5조, 제6조 등
「스포츠클럽법 시행령」 제11조 등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1) 조례안 : 별도 첨부

2) 신·구조문대비표 : 해당 없음

3) 입법예고 : 2022. 11. 11. ~ 11. 17.

4) 규제심사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서울특별시 금천구 스포츠클럽 지원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스포츠클럽법」 제3조에 따라 스포츠클럽 지원 및 진흥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체육활동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주민의 건강과 체력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스포츠클럽”이란 「스포츠클럽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2. “지정스포츠클럽”이란 스포츠클럽 중에서 법 제9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한 스포츠클럽을 말한다.
3. “스포츠클럽회원”이란 스포츠클럽의 시설이나 프로그램을 이용하기 위하여 스포츠클럽에 가입하여 정기적으로 회비를 납부하고 활동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스포츠클럽의 지원 및 진흥 등에 관한 사항은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이 조례를 적용한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 등) ①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스포츠클럽의 지원 및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장애인의 스포츠클럽 활동을 장려·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 스포츠클럽 및 스포츠클럽회원은 해당 스포츠클럽의 효과적 진흥을 위하여 노력하며, 이에 관한 서울특별시 금천구(이하 “구”라 한다)의 시책에 참여·협력해야 한다.

제5조(시행계획 수립 등) ① 구청장은 스포츠클럽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법 제5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정한 사항
2. 「스포츠클럽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서 정한 사항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등록 및 취소) ① 스포츠클럽으로 등록하고자 하는 법인 또는 단체는 법 제6조에 따라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등록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스포츠클럽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 및 범위) 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시행계획에 따라 스포츠클럽의 진흥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스포츠클럽의 요청이 있는 경우 법 제12조에 따라 지방체육회에 소속된 체육지도자를 파견하여 순회지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구 체육발전을 위하여 법 제13조에 따라 지정스포츠클럽에서 우수한 선수를 발굴·육성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스포츠클럽의 진흥을 위하여 법 제14조에 따라 선수 또는 선수였던 사람이 특기를 활용하여 스포츠클럽을 설립·등록하고자 할 경우 행

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⑤ 구청장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지정스포츠클럽에 공유재산 중 체육 시설의 사용을 허가하거나 그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⑥ 구청장은 영 제1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스포츠클럽의 체육시설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지정스포츠클럽의 행사·강습·훈련 등 : 사용료의 100분의 100

2. 지정스포츠클럽을 제외한 스포츠클럽의 행사·강습·훈련 등 : 사용료의 100분의 80

제8조(지원 신청 및 교부 등) ① 제7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스포츠클럽은 사업계획서 및 보조금 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신청, 결정, 교부, 정산 등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9조(회계관리) ① 스포츠클럽은 지원받은 보조금의 효율적 관리·운용과 명확한 회계책임을 위하여 회계책임자를 지정·운영해야 한다.

② 스포츠클럽은 보조금의 적정한 관리·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모든 수입과 지출에 대한 사항을 기록한 후 관계 증빙서류를 보관해야 한다.

제10조(보고·검사 등) ① 구청장은 보조금을 지원받은 스포츠클럽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 및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매년 한 차례 이상 소속 공무원에게 그 사업소·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장부·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시정이 필요한 경우 스포츠클럽에 적절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스포츠클럽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때에는 해당 보조금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제11조(환수) 구청장은 제10조에 따라 스포츠클럽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지급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제12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 「스포츠클럽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스포츠클럽”이란 회원의 정기적인 체육활동을 위하여 제6조에 따라 등록을 하고 지역사회의 체육활동 진흥을 위하여 운영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2. “지정스포츠클럽”이란 스포츠클럽 중에서 제9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한 스포츠클럽을 말한다.
3. “스포츠클럽회원”이란 스포츠클럽의 시설이나 프로그램을 이용하기 위하여 스포츠클럽에 가입하여 정기적으로 회비를 납부하고 활동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스포츠클럽의 지원 및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스포츠클럽 활동을 장려·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및 제2항의 시책을 수립하고 스포츠클럽을 안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스포츠클럽 진흥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5조(스포츠클럽 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스포츠클럽 진흥을 위하여 5년마다 스포츠클럽 진흥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스포츠클럽 진흥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스포츠클럽의 시설 사용 등에 관한 사항
3. 스포츠클럽 진흥을 위한 재원 확보 및 관련 기관·단체의 협력 등에 관한 사항
4. 제18조에 따른 스포츠클럽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스포츠클럽 진흥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스포츠클럽법 시행령」

제2조(스포츠클럽 진흥 기본계획) 「스포츠클럽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스포츠클럽의 기반 구축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2. 종목별 리그 등 스포츠클럽 대회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
3. 스포츠클럽 운영을 위한 행정인력 등의 육성에 관한 사항
4. 스포츠클럽을 지역사회 및 학교 등과 연계하는 방안에 관한 사항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스포츠클럽의 등록) ① 지역사회의 체육활동 진흥을 위하여 운영되는 법인·단체로서 스포츠클럽으로 등록하고자 하는 법인 또는 단체는 제2항의 요건을 갖추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등록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등록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스포츠클럽의 운영 및 의사결정 등에 관한 정관이 있을 것
2. 스포츠클럽 연간운영계획서를 보유하고 있을 것
3. 대표자 및 스포츠클럽회원의 대의기구가 있을 것
4. 정기적으로 회비를 납부하고 활동하는 회원의 수를 상시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으로 유지할 것
5. 그 밖에 스포츠클럽 등록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법인 또는 단체가 스포츠클럽 등록을 신청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심사하여 등록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7조(스포츠클럽 등록의 취소)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스포츠클럽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제6조에 따른 등록을 한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②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등록된 스포츠클럽이 등록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명할 수 있고, 그 기간이 지나도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③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스포츠클럽 등록의 취소를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12조(체육지도자의 순회지도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스포츠클럽의 요청이 있는 경우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9호가목에 따른 지방체육회에 소속된 체육지도자를 파견하여 순회지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순회지도의 방법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선수 육성 지원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체육 발전을 위하여 지정스포츠클럽에서 우수한 선수를 발굴·육성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우수한 선수의 발굴·육성 등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선수 등의 스포츠클럽 설립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사회의 스포츠클럽 진흥을 위하여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선수 또는 선수였던 사람이 특기를 활용하여 스포츠클럽을 설립·등록하고자 할 경우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스포츠클럽 설립·등록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공유재산의 우선 수의계약 및 사용료 감면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공익 목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지정스포츠클럽에 공유재산 중 체육시설의 사용을 허가하거나 그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지정스포츠클럽에 공유재산 중 체육시설의 사용을 허가하거나 그 관리를 위탁하는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 및 제27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체육시설에 대하여 우선하여 수의의 방법으로 허가하거나 수의계약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스포츠클럽이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전문체육시설 및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생활체육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나 그 밖의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스포츠클럽법 시행령」

제11조(전문체육시설 및 생활체육시설 사용료의 감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스포츠클럽이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전문체육시설 및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생활체육시설을 스포츠클럽의 행사·강습·훈련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지정스포츠클럽: 사용료의 100분의 100 이하
2. 지정스포츠클럽을 제외한 스포츠클럽: 사용료의 100분의 80 이하

제20조(보고·검사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스포츠클럽 및 지정스포츠클럽에 그 업무에 관한 보고를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그 사업소·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장부·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22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에 따른 체육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스포츠클럽법 시행령」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법 제6조에 따른 스포츠클럽의 등록과 등록사항 변경신고의 접수·검토 업무를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의2제1항에 따라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이 설립을 인가한 지방체육회에 위탁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법 제12조에 따른 체육지도자의 순회지도 요청의 접수·검토 업무를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의2제1항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설립을 인가한 지방체육회에 위탁한다.